

제351회 임시회
2016. 10. 7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-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3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,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,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설치, 기금 ‘운영’ 을 관계 법령에 따른 ‘운용’ 으로 개정 (안 제1, 2조)
- 나. 기금의 용도에 관해 포괄 규정으로 변경 (안 제5조)
 - (현행) 학자지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금, 평생교육시설 기자재 등 지원
 - (개정) 학자금지원,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, 청소년 평생교육 지원, 그 밖에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
- 다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6조에 따라 1979년

도에 설치된 것으로, 979,083천원(2015년 말)이 조성되어 있으며, 기금의 사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.

※ 「**청소년 기본법**」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15. 7.24)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-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·운영 기금이 아님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,

※ 「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2015.7.24.>

- 또한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 수준으로 명시하고,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조의 용어 중 ‘설치운영’ 을 ‘설치·운영’ 으로 변경함.
 - 사전적 의미로 ‘운영(運營)’ 은 조직이나 기구 등을 관리하면서 움직여 간다는 의미로 학교, 기업, 대회 등과 어울려 사용되지만, ‘운용(運用)’ 은 기금, 예산 등과 어울려 사용됨.
 - 관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서도, 기금의 ‘운용’ 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, 해당 조항에서 ‘운영’ 보다는 ‘운용’ 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.

○ 안 제2조(기금구성) 에서, 제1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” 을 “충청북도의 출연금” 으로 해당 출연 주체를 구체화 시켜 명시함.

○ 안 제5조에서, 조명을 “(기금지급대상등)” 에서 “(기금의 용도)” 로 변경하고, 지급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, 안 제6조((대상추천자의 선발)를 삭제함.

- 기금의 용도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※ 「**청소년 기본법**」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·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현행 조례에는 기금 용도를 지원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,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로 규정하고 있고, 지원대상도 중복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·미진학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기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세부 지원 내용 등과 관련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음.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, 대상의 확대·축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불편함이 있음.

• **현행 조례 제6조 근로청소년 추천과 관련해서는** 교육부의 「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이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었던 충청도 내 야간제 특별학급의 해소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이 곤란한 바, 이를 시장·군수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임.

- 따라서, 본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, 그 밖에 대상 및 세부 지원 내용 등은 제8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용과 개정에서 효율성 및 합리성을 기하도록 함.

○ 안 제7조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0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, 기금의 운용 및 개정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지원대상 등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내용 및 법적으로도 타당함.